**작성방법안내**

1. **「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협약서」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된 정규 문서임으로 임의 변경 및 문구 삭제, 추가 등이 불가합니다.**
2. **출력 전 워드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시거나 출력 후 수기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.**
3. **협약서 상단 밑줄 부분에 기업명을 적어 주시고**  
   **협약서 하단 작성 날짜와 기업주소 및 대표자 명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.**
4. **2부 출력 후 직인 날인을 반드시 해 주세요.**  
   **※ 직인은 서명 또는 이미지 적용이 불가하오니 실제 도장(대표자 도장 혹은 기업 직인)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5. **교육센터에 날인된 협약서 2부, 전략분야 인력양성 사업 협약기업 일반 현황 1부,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우편 또는 교육생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**  
   **(실물 협약서가 있어야 합니다.)**
6. **교육이 임박한 경우 선 교육 진행 후 협약서를 제출해 주셔도 되나 그런 경우 미리 교육센터와 상의해 주세요.**

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협약서**  (사)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(이하, “공동훈련센터”라 한다)와 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(이하, “협약기업”이라 한다)는 「고용보험법」시행령 제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「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」(이하 “컨소시엄 사업”이라 한다)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  **제1조(목적)** 본 협약은 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 **제2조(기관의 역할)** ① 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령 및 「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」(이하 “규정”이라 한다) 및 「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 한다.  1. 협약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분석,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수요조사,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등 직업능력개발 지원  2. 협약기업 원활한 인력공급을 위한 채용예정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개발․운영 등 지원  3. 그 밖에 협약기업의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며, 컨소시엄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에 적극 노력한다.  **제3조(훈련비용에 관한 약정)** ① **(사업주훈련 환급방식)**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컨소시엄 사업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용은 「고용보험법」 제27조 및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제20조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충당한다. 이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「고용보험법」 제27조 및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제20조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비용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.  ② (선지급 방식) 공동훈련센터는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.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약정은 협약기업이 명시적인 해지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본 협약서의 효력이 유효한 기간까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. 다만, 회계연도 중에 본 협약서의 효력이 상실하더라도 제2항에 따른 약정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.  ④ 공동훈련센터는 컨소시엄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면서 규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협약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.  1. 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만으로는 교육훈련실시가 어려운 경우  2. 훈련생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교육훈련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훈련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경우  3.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 **제4조(성실의무)**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컨소시엄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  **제5조(협약기간)**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컨소시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. 다만, 컨소시엄 사업 종료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년간 컨소시엄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. 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,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. (협약서 복사본 또는 스캔하여 전자문서(스캔본 파일)로 보관 가능)  20 년 월 일   |  |  |  |  | | --- | --- | --- | --- | | **(공동훈련센터)** | | **(참여기관)** | | | **(사)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** | |  | | | **주 소 :** | **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22**  **JS빌딩 2층 NCIA** | **주 소 :** |  | | **대표자 :** | **최 요 철 (인)** | **대표자 :** | **(인)** |   **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**  ※ 첨부서류 : [첨부1]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협약기업 일반 현황 1부 |

【 첨부 】

**<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 일반 현황 >**

|  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 일반 현황 | | | | | | | |
| 회사명 |  | | | 대표자명 | |  | |
| 주소(본사) | 우편번호( ) | | | | | | |
| 업 태 |  | 업 종 |  | | 상시근로자수 | |  |
| 담당자 | 성 명 |  | | | HRD부서명 | |  |
| 전화번호 |  | | | FAX | |  |
| 전자우편 주소 |  | | | 홈페이지 주소 | |  |
| 고용보험관리번호 | |  | | | 사업자  등록번호 | |  |
| 【 기타 사항 】 | | | | | | | |

\*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수 첨부!!!